

소 제 기 청 구 서

청구인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음

피청구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대표이사 류시열

청구인들은 별지2주식보유현황표기재와 같이 피청구인의 주식 830,512주 (0.506%)를 보유하고있는 주주들로서 피청구인에게 다음과같은 이유로 증권거래 법 제191조의3 및 상법 제403조에 의하여 소수주주권으로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 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합니다.

1997. 6. 2.

위 청구인

별지목록1과같음

주식회사 제일은행 귀중

청 구 이 유

1. 피청구인의 한보철강공업주식회사(이하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현황

피청구인은 1993. 11. 4. 97억 3,000만원을 한보철강에게 사채지급보증 명목으로 여신제공한 이래 1997. 1.경에 이르기까지 대출 및 지급보증으로 거액의 여신을 제공하였는바, 1997. 2.경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한보철강 관련 금융기관 특별검사결과에 의하면 1997. 1. 31. 현재 피청구인의 한보철강에 대한 순여신규모는 대출금 6,329억원과 지급보증금 4,465억원을 합한 1조 79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경위 및 부도

한보철강은 1957년 설립된 후 1988.경 한보그룹의 건설부문을 합병하여 1990년 현재 철강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던 국내 5대 전기로 제강업체중의 하나로서 한보그룹의 주력기업이었는데, 동회사의 규모는 1990. 6.경 자본금 800억원, 총자산 2,675억 5,500만원에 종업원은 1,476명이었습니다. 동사는 1990. 초부터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와 부근 공유수면등 일대에 공유수면매립 및 임해철강공업단지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990. 8. 전국종합신용평가(주)에서 분석한 총소요자금규모는 1조 536억 6,320만원이었으며, 같은해 11.경 한보철강 스스로 작성한 아산만 철강공업단지 사업계획서 상으로도 총소요자금 규모가 1조 1,786억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부도처리에 이르기까지 사업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1996. 12.경에 이르러서는 총소요자금 규모가 5조 7,265억원으로 확대되었고, 그러

한 과정에서 경영주의 부실경영과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을 견디지 못하고 1997.

1. 23.자로 최종부도처리되어 현재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 법정관리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1997. 4. 2. 철강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사팀이 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실사자료에 의하면 한보철강 소유 자산의 시장가치는 보고일 현재 4조 5,000억원 내지 5조원 정도도 추정되고 향후 완공을 위해 약 1조 5,000억원의 추가자금의 투여가 요구된다고 하고 있는바, 1997. 1. 31. 현재 한보철강은 자본금이 99,161,095,000원에 불과한 반면에 대출과 지급보증을 합한 금융권여신 부채만 도 5조 992억에 이르고 있어 여기에 거래중소기업, 근로자등을 비롯한 한보철강에 대한 총채권자들의 부채를 더하면 한보철강은 막대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한보철강에 대해 여신을 제공한 금융권으로서는 부실채권을 안게 될 것이 확실하며, 더구나 피청구인의 경우에는 1조원 이상에 이르는 거액의 여신에 대해 담보마저 부실한 상태여서 피청구인으로서 회수불능여신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피청구인 등에 대한 특별검사결과

위 검사결과에 의하면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사업은 당초부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1990. 12.-1997. 1.까지 당초 사업계획이 9차례에 걸쳐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지원도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주사 편의 위주로 취급되었고, 또한 전문기술 평가기관의 국내부채로 거액의 자금과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금융기관이 자체평가함으로써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적정하고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각 은행들은 사업성평가 등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없이 개별적, 단편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업 소요자금 산정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한 실효성이 결여된 차주사의 자체자금조달계획을 여과없이 수용하는등 자금조달 및 투자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금지원을 위한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담보총액의 37%만을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63%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또는 감정절차를 마치지 못해 금융기관이 자체평가하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특히 차주사가 작성 제출한 총사업규모와 한국신용정보(주)의 평가내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없이 여신을 지원한 점, 1995년 하반기 이후 재무구조 악화, 자금조달능력 불투명 등의 상황에서 여신위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신관리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1995. 10. 이후 한보철강의 외부자금 조달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금용도, 적정여신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없이 여신을 지원한 점, 운전자금 지원시 적정 지원규모를 초과한 상태임에도 용도 및 상환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취급하였고 시설자금지원을 위한 사채지급보증시 자금용도의 구체성이 결여되었음에도 사채발행한도 범위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 피청구인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발생

1993. 10.경부터 1997. 1.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은 모두 피청구인의 상임이사회에서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은행감독원의 특별감사 결과에 비추어 위 결의에 가담한 이사들은 은행법등 관계법령과 피청구인의 정관 및 각종 내규를 위반하고 이사로서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결의에 가담한 이사들로서는 한보철강이 부도처리됨으로써 회수불능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피청구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 위와 같이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소수주주로서 피청구인에게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피청구인에 대하여 소제기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증명서 사본